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06. 4. 10 조례 제 231호
전문개정 2010. 2. 22 조례 제 465호
일부개정 2011. 12. 30 조례 제 559호
일부개정 2012. 1. 30 조례 제 567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2013. 6. 3 조례 제 617호
일부개정 2013. 7. 15 조례 제 622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4. 1. 13 조례 제 654호
일부개정 2014. 8. 11 조례 제 685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5. 2. 27 조례 제 720호
일부개정 2015. 10. 12 조례 제 766호
일부개정 2016. 10. 14 조례 제 838호
일부개정 2017. 9. 27 조례 제 915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11. 4 조례 제103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사항
5. 임직원에 관한사항
6. 이사회에 관한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사항
8. 공고에 관한사항
9. 자본금에 관한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27〉

②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 단,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의 인사·조직 업무를 관할하는 국(실)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 30, 2013. 7. 15, 2014. 8. 11, 2015. 10. 12, 2016. 10. 14, 2017. 9. 27〉

③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의 공단관리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6. 3〉

② 삭제 〈2015. 10. 12〉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3. 6. 3. 2015. 2. 27〉

② 삭제 〈2015. 2. 27〉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3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10. 14〉

1. 삭제 〈2016. 10. 14〉

2. 삭제 〈2016. 10. 14〉

3. 삭제 〈2016. 10. 14〉
4. 삭제 〈2016. 10. 14〉
5. 삭제 〈2016. 10. 14〉
6. 삭제 〈2016. 10. 14〉

② 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6. 10. 14〉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27]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자신의 이익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5. 2. 27〉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삭제 〈2015. 2. 27〉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제20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4. 1. 1, 2017. 9. 27〉

1.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2. 버스승강장 청소
3.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4.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운영
5.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6.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7.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8.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9.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10. 공설묘지 관리운영
11.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12.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1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단, 공설묘지 관리운영은 묘적부 등 관련문서 정비 후 시행한다. 〈신설 2011. 12. 3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11. 12. 30〉

제21조(대행사업 및 비용부담)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20조의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2.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 또는 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사무
4. 상급기관 운영지침에 따른 지정 위탁 및 대행

④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당초 단위사업의 예산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될 경우 또는 기구 및 정원 변경에 따라 4명 이상의 증원이 있는 경우(다만, 임원은 예외로 한다)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4]

제22조(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양주시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의뢰하는 경우, 당해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3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 제68조제1항의 정기평가 외 별도로 공단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시장이 정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통지침에 위반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삭제 〈2015. 10. 12〉

제29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0조(감독)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5. 10. 12〉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파견ㆍ겸임 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ㆍ겸임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평정·관리한다.

제35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양주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2015. 2. 27〉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월 이내에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공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65호, 2010.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이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59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20조재1항제2호 중 ‘버스승강장 청소’ 사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7호, 2012. 1. 30〉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9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㉗ 생략

부칙 〈조례 제617호, 2013.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2호, 2013. 7. 1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9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⑮ 생략

부칙 〈조례 제654호, 2014. 1. 1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2014. 8.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9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⑮ 생략

부칙 〈조례 제720호, 2015. 2. 27〉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6호, 2015.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8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5호,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2호, 2019.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